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 안 번호	330
-----------	-----

2011년 6월 2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1년 6월 2일, 전철수 의원 외 34명

나. 회부일자 : 2011년 6월 13일

다. 상정일자

-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교통위원회(2011.6.29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 : 전철수 의원)

가. 제안이유

-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서울지역의 관광명소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요금이 인근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관광버스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편,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지불 수단 다양화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별로 이용가능한 지불가능 수단을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객의 지불 수단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차요금 부담으로 도로에 무단 주·정차하고 있는 관광버스를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관광버스 주차요금을 별도로 규정함(5급지를 제외한 지역은 시간당 3,000원,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 추가 징수, 안 별표1 비고 제8호)

- 주차장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장의 주차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별 지불 가능한 수단을 이용객이 쉽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공지토록 함(안 별표1 비고 제9호)

###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요금이 인근 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효율이 저하되고, 관광버스가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하는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관광버스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하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등의 문제를 개선하며, 관광버스 주차장 이용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한편(안 별표1 비고 제8호),
-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의무를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주차장별로 이용가능한 지불가능 수단을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이용객의 지불수단 선택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것임(안 별표1 비고 제9호)

#### 나. 관광버스 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관련 검토의견

- 서울시는 시내 주요 관광명소를 찾는 단체관광객 수요에 대응하는 관광버스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장기적으로 총 25개소 424면의 관광버스 주차면을 마련할 방침<sup>1)</sup>을 세우고 주차장 확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 ■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계획

구 분	단기계획	중·장기계획				
		노상주차장	소계	기존 공영주차장	사내버스차고지 활용	주차장 신규건설
총 계	25개소 424면	8개소 64면	17개소 360면	4개소 50면	6개소 76면	7개소 234면

현재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적선동, 미근동, 신문로 등에 위치한 관광버스 주차장

1) 관광버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확충계획, 서울시장방침 제407호(2010.10.26)

의 경우 30%의 주차요금 할인<sup>2)</sup>에도 불구하고 인근의 관광버스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버스기사들이 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노상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배회운행을 하는 등 도심의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상황임

---

2)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1 비고 재4호, 시장은 인근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30%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관광버스 주차장(노외) 운영 실태('11.4.20 현재)

구 분	적선동	신문로	미근동	비고
총 주차면수	30면	5면	5면	-
이용현황	58대	4대	1대	53일간 운영 결과
1일평균	1.09대	0.08대	0.01대	

- 따라서, 동개정조례안에서와 같이 5급지를 제외한<sup>3)</sup> 관광버스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인근의 주차장과 유사하게 인하함으로써 관광버스 주차장의 이용효율을 증대시킬 필요가 큰 것으로 생각됨

또한 주차장 이용요금을 인하할 경우 주차장 이용율 증대를 통해 세수 증대에도 다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관광버스 불법 주·정차 및 배회운행에 따른 도심교통 혼잡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도심지역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 현황(시간당)

요 금	2,000원	3,000원	5,000원	6,000원	12,600원
총 계	경복궁, 중앙 박물관, 신촌역	역사박물관	전쟁기념관, 독립공원(5,400원)	롯데호텔	적선동 공영주차장

다.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불수단 다양화 및 공영주차장별 지불수단 공지 관련 검토의견

- 현재 서울시는 공영주차장 관리를 서울시설관리공단 및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일부 무인정산시스템이 구축된 공영주차장을 제외하면 교통카드 등을 통한 요금결제가 불가능하고, 일부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의 경우는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도 어려워 주차장 이용 시민들의 결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임
- 최근 일부 대형 할인점의 경우 이용객의 결제편의 제고를 위해 교통카드를 통한 결제가 가능토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으며, 편의점 등에서는 교통카드를 이용한 결제가 일반화 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서울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또한 지불수단 다양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3) 5급지의 경우 10분당 주차요금이 100원으로 개정안에서 제안된 주차요금보다 오히려 낮은 수준임

- 또한, 신용카드 등을 통한 결제가 가능한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지불가능 수단에 대한 공지가 부족하여 현금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등 시민들의 결제 편의가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주차안내관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영차고지별 지불가능 수단을 공지토록 하여 시민들의 결제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민편의 증진 및 행정서비스 향상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비고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

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6조 제1항 관련) 1.~7.(생략)</p> <p>(신설)</p> <p>(신설)</p>	<p>(별표1) (현행과 같음)</p> <p>1.~7.(현행과 같음)</p> <p>8. 5급지를 제외한 관광버스 주차장 1구획의 주차요금은 1시간당 3,000원으로 하고 2시간 초과 시 10분당 1,000원의 요금을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주차요금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한 요금을 부과한다. (“관광버스주차장”이란 관광용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규모별 세부기준에 의한 중형 이상의 승합자동차 주차구획을 말한다)</p> <p>9. 시장은 지불수단(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별로 지불 가능한 결제 수단을 주차안내판 등 주차장 이용객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여야 한다.</p>